##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08

발의연월일: 2024. 9. 24.

발 의 자:위성곤·한병도·조인철

한준호 · 모경종 · 민병덕

문대림 · 김한규 · 박희승

황정아ㆍ허 영ㆍ최민희

정을호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7조·제40조·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·군·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.

현행법에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등 2개 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 어업에 비해 어획강도가 매우 낮고 영세 어업인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어업이기 때문인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하여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을 하는 원정 물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이 늘고 있음.

이에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

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원정 물질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). 법률 제 호

##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주소지 이외 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주소를 두 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(신고어업) ① 제7조ㆍ제40	제48조(신고어업) ①
조・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	
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	
는 자(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	
장소를 관할하는 시・군・구에	
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	
정한다)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	
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	
<단서 신설>	<u>다만,</u>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
	서를 발급받고 주소지 이외 지
	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
	<u>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</u>
	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을
	적용받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
	<u>할 수 있다.</u>
② ~ ⑨ (생 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